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20. 9. 29.>

[V]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
[ ] 조합원(회원)

연번	발기인/설립동의자	성 명 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연락처	이해관계자
1	발기인	이협동	123456-15445077	010-2254-6565	
2	발기인	김지원	452456-15445077	010-2454-6567	
3	발기인	서필요	986532-15445077	010-2234-6995	
4	발기인	정직한	896366-15445077	010-3564-6565	
5	발기인	오도움	556422-15445077	010-3597-5120	
6	설립동의자	차친절	636422-15445077	010-2478-7410	

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적습니다.(예/ 생산자, 소비자, 다중이해관계자 등)

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발기인은 5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.
발기인이 아닌 사람은 [설립동의자]로 기재합니다.
발기인도 설립동의자에 포함되지만 정관의 기명날인자를 알기 위해 발기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작성방법
1. 이해관계자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적습니다.
2. 연합회 설립 시 회원인 협동조합의 정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